

# 2024 세법학 I.zip 추록

2024년 5월 30일 발행  
정정운 · 손재호 | 상경사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법학 I.zip』 (정정운 · 손재호) 제6판
- 주요 내용 : •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  
•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

## I. 오류수정사항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165	下 11	상속인(배우자 제외)	상속인(배우자 포함)
246	上 13	실제소유자가가	명의자가
264	上 13~14	② 출연재산가액의 1% 금액 이상을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삭제
270	上 5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340	下 15	2/1,000	3/1,000
	下 14	1/1,000	2/1,000

## II.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

### 1. 2023년 귀속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율 조정

🔄 p.233 上 3~11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2) '소득세율(14%~45%)'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율
	5,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4%
5,76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5,76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초과배당금액 - 8,800만원) ×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1억5,000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10억원) × 45%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보완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출자자(출자임원은 제외) : 배당 ② 임원·직원 : 상여 ③ 그 외의 자 : 기타사외유출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보완 <input type="checkbox"/>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 (종전과 같음)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④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개정이유>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동일하게 귀속자가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④ 그 외의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보완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 p.333 下 2~1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출자자(출자임원 제외)는 배당, ② 임원·직원은 상여,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기타사외유출, ④ 그 외의 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 p.344 上 12~13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위법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의 하나로 손금불산입한다.

### 🔍 p.579 下 7~2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②,④)」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이는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각종 공제혜택을 받았으나, 위법소득인 점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각종 공제혜택 배제).